



INTERNATIONAL HUMANRIGHTS NEWSLETTER

國際人權報

www.humanrights-korea.or.kr



제 608호 (月刊) 2019년 8월 15일 (1968년 5월 7일 등록번호 라-01007호) 발행 겸 편집인: 김종량 주간: 최성철 인쇄인: 김준배 발행처: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당면목표·인권사상의 양양·인권제도의 개선·인권침해의 구제·북한인권의 개선,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UN소속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인권기구의 가맹단체임 -ISSN 1227-5182

2030 유엔의제는 2015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정치적 약속이다. 여기에는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169개의 세부이행 타겟과 200여개의 지표가 있다. 이는 인권에 관한 원칙과 조약에 터잡고 있음을 명시하고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목표이행을 요구한다. 2000년 새천년발전목표(MDGs)는 인권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그 당시 인권보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했던 국가들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이다. 2030 의제는 MDGs의 후속편이 아니라 정부가 착수하고 감시하는 의무를 지는 새로운 청사진이고, 지배구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연계시킨 최초의 글로벌 합의이다. 즉 평등과 무차별성,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기회 균등성,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의 원칙 등 모든 인권원칙을 다 포함한 것이다. 빈곤 척결, 식량, 건강, 교육, 식수와 위생, 적절한 일거리와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발전 목표는 기존 인권 원칙에서 직접

영감을 얻었다. 2030 의제가 가장 강조하는 '나오자 한 명도 없게 하라'는 원칙은 평등 및 무차별의 인권 원칙에서 가져온 것이다.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적 행동을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는 사회경제적 권리의 근본이념도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대한 빈부격차는 평등 원칙에 대한 수치이다. 교육, 건강, 주거, 식수와 위생에 관한 권리라는 지불 능력 있는 자에게만 파는 상품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SDGs 를 달성하는 수단도 인권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적절한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이 SDGs를 달성하려고 하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권의무를 이행하면 SDGs 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으므로 SDGs와 인권은 현실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이다. 2030 의제는 인권을 더 중요시하고, 인권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시민적, 경제



송상현

본연맹 이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인권과 2030 유엔의제의 국제형사법

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적극적 실현을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타겟 및 시간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다보니 인권에 터잡은 2030 의제는 국제형사법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국제형사법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권에 위기가 왔다는 데에 대

한 반응이고 인권의 최후적 강제 실현방식이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복잡다각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국제법도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등 새롭게 발전했으나 이 분야는 모두 인권 보호라는 공통점이 있다. 1945년 뉴른베르크 재판소, 유엔안보리가 임시로 창설한 구 유고전범재판소 등 몇 임시형사법정을 거쳐 2002년 영구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했다. 사실 지난 30여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형사책임추궁 메카니즘이 빨리 발전했다. 국제법도 인권의 보호와 촉진에 중점을 두는 국가정책수립과 국내 입법에 점차 한동을 하고 있다.

법의 지배란 거버넌스(Governance)의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나 국가를 포함한 공적, 사적 기구와 조직은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평등하게 집행되는 동시에 독립적 심판기준이 되면서도 국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에 일치하는 지배원리를

준수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 우선원칙, 법 앞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 법적용의 공정, 권력분립, 의사결정에의 참여, 법적 확실성, 자의성의 배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을 요구한다. 국제형사법의 등장과 개인의 형사책임추궁, 그리고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중죄에 대한 부당면책(impunity)의 종식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최근 동향에 비추어 심각한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제평화와 지속적 발전에 불가결하고 형평적 정의의 필수적 요소이다. 부당면책 종식에 실패하면 평화와 발전은 커녕 무력충돌의 재발 위험이 증가하고 충돌이 발발하면 모든 인권이 짓밟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30 의제는 평화, 정의 및 발전은 서로 연관되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진일보한 인식의 결과이다. 즉 평화와 정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불가능하고 법의 지배를 준수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인권과 2030 유엔의제와 국제형사법

1면 송상현 이사 논단에서 계속

국제형사법과 SDG16은 모두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한다. 국제형사법은 전쟁 등 네 가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위반을 수사·처벌하여 전쟁을 방지하며 SDG16은 몇 가지 세부적 타겟을

통하여 인권보호를 보장한다. 그리하여 양자는 함께 세계의 평화, 안전 및 발전을 촉진한다. 국제형사법은 국제범죄의 책임추궁을 통한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형사기구와의 협력 및 역량제고를 통하여 국내사법제도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강화시키는 수단이다. 또

한 국제범죄의 피해자에게 정의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국제형사법은 SDG16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에의 접근을(access to justice for all)’이라는 원칙의 달성을 지름길이 된다. SDG16은 차별 없는 법과 정책의 촉진 및 집행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지만, 국제형사법은 차별, 착취, 파괴를 범한 고위직을 처벌하여 구제책을 제공한다.

요컨대 평화, 정의 및 포용의 제도에 관한 SDG16은 정의에의 접근이 가능하고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을 지는 포용적 제도가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2030 의제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각국은 법의 지배에 터잡아 정의의 측면을 고려한 지속적 발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2019 PROJECT

사랑과 나눔: 존중과 배려의 2019년

- ◆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 ◆ 사랑의 실천을 위한 봉사사업 확대